

산학협력단 연구비 내부감사제도 운영내규

제정 2007. 2. 28

개정 2010. 7. 13

제 1 조(목적) 이 내규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당성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연구비 내부 감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비 내부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위원회 구성)

-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연구처장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부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며,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조(위원회 기능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
 - 1.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
 - 2. 연구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
 - 가. 중간·최종결과보고
 - 나.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 및 기자재의 귀속처리
 - 다. 연구비 관련 지침 및 협약서에 명시된 제반사항 이행
 - 3. 평가시기와 평가대상과제는 필요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.
 - 4. 평가는 소정의 평가표(별표1)에 의거하여 위원들이 1차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장이 최종 평가한다. 단,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본인의 연구과제를 평가할 수 없다.

제 4 조(회의)

-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할 수 있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5조(결과 통보 및 조치)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. 또한,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연구자에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연구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조(보칙)

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이 운영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개정내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연구비 내부감사 평가표

1. 지원사업명 :
2. 연구과제명 :
3. 연구책임자 :
4. 연구기간 :
5. 실 연구비 : 총 천원

구 분	총 계	인건비	연구활동비	직접경비	기타
금액(천원)					

6. 평가항목

평가 항목	배점	평가결과	점수	평가기준
세금계산서, 법인카드 사용률 (직접경비 중 사용비율)	15			- 기준 : % - 70%이하 : 5점 - 80%이하 : 9점 - 90%이하 : 13점 - 90%초과 : 15점
개인카드, 간이영수증 사용률 (직접경비 중 사용비율)	15			- 기준 : % - 5%초과 : 5점 - 5%이하 : 9점 - 3%이하 : 13점 - 0% : 15점
연구용 구입도서 귀속처리	15			- 기준 : 완료여부 - 완료 : 15점 - 미완료 : 10점
연구용 구입기자재 귀속처리	15			- 기준 : 완료여부 - 완료 : 15점 - 미완료 : 10점
기타 : 규정/지침 외 연구비 사용 (연구책임자의 사유서로 처리된 건 포함)	20			- 기준 : 건수 - 3건초과 : 13점 - 3건이하 : 15점 - 1건이하 : 18점 - 0건 : 20점
중간, 결과보고서 제출	10			- 기준 : 제출여부 - 완료 : 15점 - 미제출 : 10점
협약시 명시된 제반사항 이행	10			- 기준 : 이행여부 - 이행 : 15점 - 미이행 : 10점
계	100			

200 년 월 일

평가위원 : (인)

평가위원장 : (인)